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 20조 제2항 1호)
-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 제2항 2호)

4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조금 환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